

개정 약관 신·구 조문 대비표

(2015.5.27)

외 환 사 업 부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u>외환거래 기본약관</u>	<u>외환거래 기본약관</u>	
제1조 ~ 제7조 (생략)	제1조 ~ 제7조 (현행과 동일)	
제 8 조 [약관의 변경]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1개월간</u> 게시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	제 8 조 [약관의 변경]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, <u>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</u> 다만,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 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 ② <u>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.</u> <u>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 ③ <u>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 ④ <u>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u>	- 약관을 변경할 경우 게시방법 및 게시기간을 명확히 함 -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할 경우 통지절차 신설